



제 437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13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9.

다. 회 부 일 : 2026. 4.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함.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가 규제당국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특히,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및 고객확인의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로 정착되었고, 그 결과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은행에의 종속,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위험의 단일은행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
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가상자산기본법안의 마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은 모두 가
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되, 자금세탁방지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실명
확인 관련 사항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남겨두고자 함(안 제3조, 제7조,
제17조 개정).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둘 이상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4. ----- 실명확인-----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확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1항에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다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이 같은 항에 따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
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
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
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를」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삭 제>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③ (생 략)	① (현행 제3항과 같음)

□ 현행법¹⁾ 제7조제1항²⁾은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

1) 이하 내용은 2026. 2. 19. 개정되어 2026. 8. 20. 시행될 예정인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됨.

※ 개정법률 주요내용: 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② 신고 요건 중 관련 법률 위반 범죄전력 유무요건의 적용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며, 대상 법률에 공정거래법·특정경제중치벌법 등을 추가함.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합)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대주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3항⁴⁾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

-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6.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는 예외로 규정⁵⁾)를 그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제도(이하 “실명계정제도”라 함)는 2020년 이 법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제도(현행 제7조)가 도입되면서 함께 신설된 제도임.

- 정부는 2018년 당시, 가상자산(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긴급대책 중 하나로 기존에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가상자산(통화) 거래를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자산(통화)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자산(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함⁶⁾.
- 이후 2020년, 이 법의 적용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도입⁷⁾한 실명계정제도를 법에 명시하였음.

5)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제1항에서는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를 그 예외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는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플랫폼명 기준,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만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음.

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2017. 12. 28.

7) 참고로, 정부가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해당 조치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각하하였으나, 4인의 재판관은 해당 조치가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실명계정제도는 당시 가상자산(통화)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역할 외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부족한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은행이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실명계정제도를 도입한 2018년 1월부터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에 가상자산 관련 고객확인, 정보공유, 거래모니터링,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함께 시행하였으며, 2020년 법 개정 당시 위 내용도 반영되었음.

□ 한편, 현재 실명계정제도를 적용받는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5개사로, 이들 거래소는 각각 1개의 은행에서만 실명계좌를 개설하는 1거래소-1은행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1거래소-1은행 체계가 현재 법령이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실명계정제도가 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체계라는 입장임.

- 참고로, 실명계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5개 가상자산사업자 별 실명계좌 개설 은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8)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단서 생략>

[표 1] 가상자산사업자(원화거래소) 실명계정 발급 일자 현황(2026. 7. 13. 기준)

연번	사업자명 (플랫폼명)	최초 발급은행		변경 발급은행	
		은행명	발급일자	은행명	발급일자
1	두나무(업비트)	기업은행	2018.1.30.	케이뱅크	2020.6.23.
2	코빗(코빗)	신한은행	2018.1.30.	-	
3	코인원(코인원)	농협은행	2018.1.30.	카카오뱅크	2022.11.29.
4	빗썸(빗썸)	농협은행	2021.2.1.	국민은행	2025.3.24.
5	스트리미(고팍스)	전북은행	2022.2.15.	-	

자료: 금융위원회

○ 현행 1거래소-1은행 체계에 대해서는,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에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사업자인 코인원은 2018년부터 실명계정을 농협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왔으나, 2022년에 카카오뱅크와 새롭게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1거래소-1은행 체계에 따라, 당시 실명계정 발급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농협은행과는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해지하였음.

- 금융위원회도 1거래소-1은행 체계 변경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시장의 경쟁 상황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우려 사항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⁹⁾을

9)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 “1거래소 1은행 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헤럴드경제 1월 2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2026. 1. 20.

밝히는 등 현행 1거래소-1은행 체계를 인정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둘 이상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1거래소-1은행 체계를 법률을 통해 폐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현재 유지되고 있는 1거래소-1은행 체계에 대해서는 ▲실명계정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와 함께, ▲규제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 도입 초기 투기 과열 및 자금세탁 우려 등에 따라 실명계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가 하나의 은행에서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음으로써 의심거래 보고¹⁰⁾ 등 자금세탁 방지 업무¹¹⁾가 단순¹²⁾해지고, 리스크 관리 및 IT 시스템

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11) 은행은 2023년 시행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에 따라 ① 실명계정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마다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하고, ② 거래출금 등 고위험 실명계정 이용자로부터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며, ③ 실명계정의 입출금이 명확한 경제적·법적 목적 없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비정상적 형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 보고 여부를 검토함.

12) 가상자산거래소가 하나의 은행에서만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그 은행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와만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이 원화와 가상자산 간의 교환, 고객 계좌에서의 입출금 등을 모니터링하여, 쪼개기 송금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포착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음.

구축이 용이해진 측면이 있음.

-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거래소-1은행체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게 규제적 성격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 고객이 특정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음.

○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쟁 측면에서 볼 때, 1거래소-1은행 체계가 시장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1거래소-1은행 체계에서 은행이 중소형 거래소와 제휴할 경우 대형 거래소와의 제휴가 불가능해지므로 중소형 거래소와의 제휴를 꺼리게 되고, 그 결과 중소형 거래소의 입지가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의견¹³⁾이 있음.
- 반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 은행에서 실명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은행의 제휴 수요가 소수의 대형 거래소에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

○ 현재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규제 체계는 이 법 외에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등이 있으나,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자금세탁

13) 한국금융연구원, '1은행 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2025. 5.

방지 의무(현행법),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1단계 법률로서, 사업자 및 디지털자산 발행·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위원회에는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10개의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이들 법안에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분류와 관계 없이 제7조 제3항에 따른 불수리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수리 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할 수 있으나, 디지털자산 2단계 체계가 갖추어진 이후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과 같이 현행 1거래소-1은행 체계를 법률로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체계가 기능해 온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함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현행 1거래소 1은행 체계가 가상자

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가상자산거래소 시장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2단계 입법 제정·시행 이후 거래소의 독립적 자금세탁방지 역량 추이 및 시장 경쟁구도에 대한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가상자산기본법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219)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됨.

- 「가상자산기본법안」은 가상자산에 관한 기본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지 여부는 「가상자산기본법안」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6